

# 시 방 서

## 적용 제품 : 조립식 과속방지턱S 1000

[본 시방서는 설치 시공 방법의 개선을 통해 사전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]

※ 개정 이력

개정날짜	개정사유	개정번호
2017.12.21	최초 작성	시방서_조립식 과속방지턱S 1000_1
2018.12.06	시공방법 수정	시방서_조립식 과속방지턱S 1000_2
2020.04.23	시공방법 수정	

## 신 도 산 업(주)

# 조립식 과속방지턱S 1000 설치 시방서

## 1. 일반 사항

### 1.1 목적

본 시방서는 조립식 과속방지턱S 1000의 설치 순서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차량의 과속방지  
와 교통사고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,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1.2 적용범위.

본 시방서는 조립식 과속방지턱S 1000의 시공 방법에 적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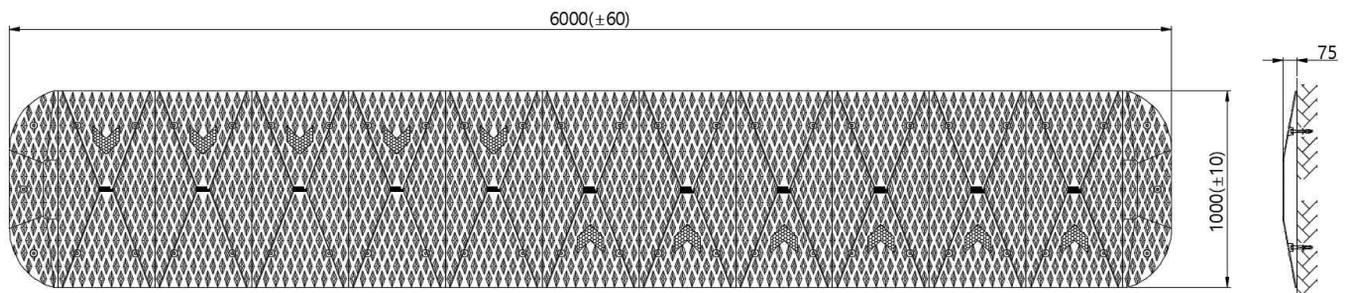
## 2. 제품의 명칭 및 규격

가. 명칭 : “조립식 과속방지턱S 1000mm”

나. 규격 : 길이(L)1000mm × 높이(H)75mm

다. 재질(원자재함량) : 고무(코드지사\_재생고무) 92% , EPDM(생고무) 8%

## 3. 제품 구조도.



## 4. 설치관리.

### 4.1 일반사항

가. 현장 감독자와 현장을 답사, 정확한 시설물 위치를 선정하며, 시공시 문제가 발생될 요소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.

나. 설치 현장의 시공 전, 중, 후 사진을 찍어 사후 관리한다.

다. 현장에 특이사항 있을 경우 별도의 “특별 시방서” 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할 수 있다.

#### 4.2 안전조치

- 가.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.
- 나. 일반 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#### 4.3 시공방법

- 가. 도면을 기준으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, 설치될 장소에는 쓰레기 및 유해한 물질을 제거한다.
- 나. 제품을 제품 구성도와 같이 조립하고  $\phi 12$ 드릴로 볼트 구멍 위치를 마킹한다.
- 다. 마킹위치에  $\phi 17$ 드릴로 깊이 110mm정도 천공한다.  
(천공 후 송풍기나 흡착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.)
- 라. 피셔를 천공된 구멍에 삽입한다.
- 마. 제품을 순차적으로 천공된 구멍 위치에 맞춰 배열한다.
- 바. 스크류양카 볼트( $\phi 12 \times 120$ mm)에 와샤를 끼워 구멍에 넣는다.  
※지하 주차장 및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 할 경우 상황에 맞는 시공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나 주로  $\phi 13$ 드릴로 깊이 50mm정도로 천공하여 신도 콘양카를 적용한다.
- 사. 전동임팩에 17mm 복스를 체결한 후, 양카(스크류 볼트)를 견고하게 조여 준다.  
(콘양카 사용시는 14mm복스를 이용한다)
- 아. 주변 정리 정돈을 하고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.

### 5. 검사

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.

### 6. 유지관리

본 과속방지턱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유지는 2014년 국토교통부 “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”을 원칙으로 한다. 지침서에 없을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.

#### 6.1 점검

점검은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의 이상여부를 점검한다.

#### 6.2 보수

- 가. 사고 또는 자연 재해에 의한 파손 또는 변형으로 인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복구한다.

### 7. 기타

### 7.1 기록

파손 또는 변형된 경우에는 면밀히 조사하여 기록 하여 개선에 반영토록 한다.

- 1) 점검 보수시의 기록은 건교부 지침에 따른다.
- 2) 시공상 특이점등 기록

### 7.2 설치관련 협조

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### 7.3 분리배출 방법

해당제품의 폐기시 1차 해당지자체의 분리배출 방법을 따른다.

일반적인 고무제품 분리배출 방법은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, 대형폐기물로 신고후 배출수수료를 납부하고 버린다.